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2. 27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2월 8일

나. 발 의 자: 양송이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2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2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양송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 조항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명시(안 제5조)
-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조항 신설(안 제6조 및 별표 2)
-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등 신설(안 제7조)
- 정조사특별휴가일수 정비(안 제8조 및 별표 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 조항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·실시하고, 연가신청 시에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- 안 제6조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연가일수 및 재직기간 기준 등이 확대되어 개정된(2023.7.18.시행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가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2023.6.13.시행)제4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고, 이와 함께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10에 근거하여 전환된 연가를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,
- 별표 3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더 많은 돌봄이 수반되는 “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” 휴가일수를 15일로 확대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조항 중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,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등 우리 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공·사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송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 289 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2. .

발 의 자 : 양송이 · 우경란 · 유승용
이성수 · 신흥식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 조항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명시(안 제5조)

나.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 확대 및
가산일수 확대(안 제6조 및 별표 2)

다.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신설(안 제7조)

-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
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
라. 경조사특별휴가일수 정비(안 제8조 및 별표 3)

-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
경조사특별휴가 부여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”를 “(당직 및 비상근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직자와 비상근무자”를 “당직 및 비상근무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직과 비상근무”를 “당직 및 비상근무”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,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·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,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.

③ 의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
제6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
[별표 2]

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6조 관련)

- | |
|---|
| <p>1.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(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(즉, 호봉 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)</p> <p>2.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하지 않음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3일 가산 <p>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</p> |
|---|

제7조(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등) ①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종전의 제5조) 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**별표 2**”를 “**별표 3**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 ①·② (생략) ③ <u>당직자와</u>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,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 등 <u>당직과</u>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 <u><신 설></u>	제4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당직 및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----- ----- ----- - <u>당직 및</u> ----- -----. 제5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의장은 <u>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·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</u>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,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. ③ 의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<u>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</u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
공무원의 연가가산) 「지방공무원
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
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
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
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
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
[별표 2]

**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
연가가산 방법(제6조 관련)**

1.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(일반직
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
으로 인정되는 사람(즉, 호봉 확정 시 인
정된 유사경력)
 2.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 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하지 않음
 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3일 가산
- 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

제7조(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등)

①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
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
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
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
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
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전환된 연가
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
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
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5조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따른다.

②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8조제2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출산	배우자	10

③ · ④ (생 략)

제6조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특별휴가) <삭 제>

① -----

----- 별표 3 -----
-----.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8조제2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출산	배우자	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
② · ③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
제9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